

栗谷先生 男妹 分財 記考 (을곡선생 남매 분재 기고)

姜 仁 求

〈文化財管理局 研究室〉

(1)

1968년 7월 8일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를 거쳐 동년(同年) 12월 19일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보물(寶物) 제477호로 지정¹⁾된 바 있는 을곡선생남매분재기(栗谷先生男妹分財記)[이하 분재기(分財記)라 함]는 건국대학교 박물관소장품으로 김상기(金庠基) 박사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일반적으로 분재기(分財記)는 이조시대의 재산상속 즉 가장(家長)이 그의 재산, 주로 노비나 토지를 가족에게 부여해준 문서로 분금문서(分衿文書)라고 통칭되어 오며 또한 금기(衿記)[깃기] 상기(裳記)[치마치] 분기(分記)[분깃] 금득(衿得)[깃득, 분재(分財)로 얻은 재산] 이라고도 한다²⁾. 이것은 사문서(私文書)로서 토지문기(土地文記)에 속하며 현재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에 5,200매에 달하는 문기(文記)가 수장(收藏)되어 있으나³⁾ 그중 대부분은 토지 또는 노비매매에 관한 문기(文記)이며 상속문기(相續文記)는 약 500여매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효·현(孝·顯)이후 특히 영·정조간(英·正祖間)이 대다수이고⁴⁾ 임란전(壬亂前)으로 올라가는 것은 극히 희귀(稀貴)하여 5) 아직까지 발견된 것은 본분재기(本分財記)외에 1967년 7월 25일에 보물 제460호로 지정된 서애선생(西厓先生) 모부인곤문기(母夫人昆文記)가 있고 강릉 권용만씨택(權容萬氏宅)에 사임당(師任堂) 오자매분재기(五姊妹分財記)가 있으나⁶⁾ 실견(實見)치 못하였다.

이러한 이조시대의 고문기(古文記)들은 당시의 농촌의 토지 및 노비의 소유문제(所有問題)는 물론 상속제도(相續制度)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료(史料)이며 또한 문기(文記)의 체제(體制)·지질(紙質) 등은 고문서학상(古文書學上) 귀중한 자료가 된다. 더욱이 그 유래가 극히 희귀(稀貴)한 임란전(壬亂前)에 있어서라?

이러한 가치들이 본분재기(本分財記)를 보물(寶物)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보존하는 사유(事由)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筆者)는 본래 사회경제사(社會經濟史)나 고문서학(古文書學)에 전연 문외한(門外漢)이나 본분재기(本分財記)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으므로 문화재관계자들에게 일호(一毫)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감히 필을 들었다.

1) 文化財委員會 第一分科委員會 68年度 會議錄 및 文化財管理局指定書類 參照

2) 金東旭: 「李朝古文書의 分類에 대하여」 人文科學 第19輯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68. 6. p. 38 參照

3) 白麟: 古文書의 研究와 그 整理問題, 國會圖書館報 第4號 1964. 9 國會圖書館 p. 103 參照

4)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東亞文化研究所所藏 奎藏閣圖書 카드 參照

5) 周藤吉之: 朝鮮後期の田畝文記に關する研究(一) 歷史學研究 第7卷 第7號 1937. 7 p. 3

6) 李殷相: 「增補師任堂의 生涯와 藝術」 1966. 8. 1 서울 成文閣 p. 350 參照

(2)

본분재기(本分財記)는 횡축권물(橫軸卷物)로 되어 있고 종장(從長) 44cm 횡장(橫長) 256cm의 크기이며 지질(紙質)은 저지(楮紙)로서 닥나무 속껍질로 만든 질긴 종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문서(古文書) 전적(典籍)들이 지금까지 남아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충해부식(虫害腐飾)에 오래 견딜 수 있는 저질(楮質)이기 때문이다.

이조의 문서는 그 외양(外樣)과 서식(書式)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분재기(分財記)는 여지(餘地) 사문서(私文書)와 함께 기중(其中) 예전(禮典) 입안식조(立案式條) 형식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⁷⁾. 즉 두서(頭緒)에 작성연월일(중국의 명청연호(明清年號))를 적고 이어서 문서를 작성하는 사단(事端)을 적는다. 다음으로 주내용(主內容)을 기록하되 개인적인 일에 우선하는 공동적(共同的)인 조상관계(祖上關係) 종가관계(宗家關係) 즉 봉사(奉祀) 묘직(墓直) 등을 먼저 적고 다음은 피상속자(被相續者)의 서열순(序列順)으로 기재해 나간다. 그리고 말미(末尾)에는 문서작성(文書作成)에 참여한 자와 당사자(當事者)의 신분과 성명, 그 아래 수결(手決)을 하게 되는 것이 통식(通式)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필집(筆執)이라 하여 작성자(作成者)를 표시한다. 토지매매(土地賣買)나 노비매매(奴婢賣買)인 경우에는 재주(財主) 정인(訂人) 필집(筆執)의 순(順)으로 되나⁸⁾ 재산상속(財産相續)인 경우에는 피상속자(被相續者)의 서열로 되고 말(末)에 필집(筆執)을 적는다. 그러나 예외로 재주(財主)나 피상속당사자(被相續當事者)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자의 순위에서 “필집(筆執)”을 신분성명(身分姓名) 위에 표시한다. 이러한 예는 극히 적다⁹⁾. 그리고 일반관문서(一般官文書)에는 물론 그것을 작성한 연월일과 그 문서를 확증(確證)하는 관인(官印)이 적혀지게 마련이나 일반사인(一般私人)은 한말(韓末)에 이르기까지 거의 인과(印類)를 사용하지 않고 사인간(私人間)에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자기(自己)의 성명(姓名)을 기재하고 그 밑에 수결(手決)하는 것이 통례(通例)로 되어 있었다. 서압(署押) 화압(花押)이라고도 칭하는 이들 서명(署名)은 양인(良人) 이상의 남자는 품계의 고하를 막론하고 수결(手決)을 사용하고 천인(賤人)은 좌수대지(左手大指)의 중절(中節)의 지영(指影)을 약화(略畫)하고 「좌촌(左寸)」이라 기(記)하며 혹 우수(右手)를 사용하는 때도 있다¹⁰⁾. 그러나 여자는 수결(手決)이나 좌촌(左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란(空欄)으로 두는 것이 통례이다. 아무튼 이러한 수결(手決)은 문서의 내용을 확신시키는 증표가 되고 문서의 진위(眞僞)나 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을 시는 진위판단(眞僞判斷)의 기준이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서식은 종서(縱書)로 일행(一行) 20자 내외가 보통이고 간혹 30자를 초과하는 예도 있으나 용지의 형편에 따른 것 같다. 右에서 左로 진행되며 대부분의 한문 또는 한자와 이두문(吏頭文)을 겸용하여 기록하였다. 서체(書體)는 정자체(正字體)보다는 초서(草書)를 사용하였다. 그러면 본분재기(本分財記)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7) 經國大典禮典立案式條 朝鮮總督府中樞院 1934. 10. 京城 p. 326 參照

8) 朝鮮田制考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10 京城 例文參照

9) 李栗谷先生男妹分財記外에 「邊昌漢의 土地賣買文記」 朝鮮田制考 p. 391

10) 朴秉濠: 韓國法制史特殊研究 韓國研究圖書館叢書第4輯 1960 p. 7 參照



<page 16 사진>

(3)

본분재기(本分財記)의 내용전문(內容全文)을 분단(分段)하여 소개하고 주요부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사십오년 병인오월이십일 동북화회지의우립의단 부모변전민을분금위곤누락 노비진고자선상일구후장유차서이의대전시행위호사시치젯응행사건을동의마련후록위와호사(嘉靖四十五年 丙寅五月二十日 同腹和會之議右立議段 父母邊田民乙分衿爲昆漏落奴婢 陳告者先賞一口後長幼次序以依大典施行爲乎事是置祭祀應行事件乙同議磨鍊後錄爲臥乎事)」

가정(嘉靖) 45년 병인(丙寅) 5월 20일 형제자매(兄弟姊妹)가 부모의 재산을 나누는 의논을 함.

右의 논의(論議)의 취지(趣旨)는 부모 양쪽의 토지(土地)와 노비(奴婢)를 상속한다. 도망노비(奴婢)를 찾아 오는 사람에게는 먼저 그 일구(一口)를 상으로 준 후에 장유(長幼)의 차례대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여 시행하은 일. 이제 제사(祭祀)에 응하여 행하는 사건(事件)은 함께 의논하여 마련하여서 다음에 기록하은 일.]



<page 17 사진(1)>



<page 17 사진(2)>

○ 첫줄은 작성연월일과 제목을 기록한 것으로 가정(嘉靖) 45년은 이조 명종(李朝 明宗) 21년 서기 1566년 병인년(丙寅年)에 해당하고 5월 20일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연대는 재주(財主)인 이원수(李元秀)가 사망한지 5년이 되고 그의 부(婦) 신사임당(申師任堂)이 사망한지는 15년째가 된다. 이 때에 피상속자(被相續者)들의 연령상태(年齡狀態)를 보면 일자(一子)인 선(璿)은 43세 되듯게 진사(進士)에는 올랐으나 아직 벼슬 길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었고 일녀(一女) 매창(梅窓)은 38세로 조대남(趙大男)의 처(妻)이고 이자(二子) 번(璠)은 생몰연대(生沒年代)가 모두 미상(未詳)이어서 당시의 연령을 상고할 길이 없다. 이녀(二女)는 이름 생몰연대(生沒年代)가 모두 미상(未詳)이나 윤섭(尹涉)의 처(妻)이고 삼자(三子)인 이(珙)는 31세가 되어 벌써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이조좌부(李朝左部)에 임명되어 있었다¹¹⁾. 삼녀(三女)도 이녀(二女)와 같이 이름 생몰연대(生沒年代)를 알 수 없으나 그의 부군(父君) 홍천우(洪天佑)와 결혼하였으나 이미 과부(寡婦)가 되어 홀로 화회지의(和會之議)에 참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자우(四子瑀)는 25세시(才時)이고 아직 생원시(生員試)를 통과하기 1년전이다. 그러면 재주(財主)인 이원수(李元秀)가 사망한지 5년이나 경과하여 분재(分財)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아마 3년상을 치르고 또 피상속자(被相續者)들 간에 개별적인 사고(事故)로 인하여 5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화회(和會)란 것은 본문기(本文記)가 재산상속문기(財産相續文記)임을 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조시대의 재산상속문기(財産相續文記)에는 화회문기(和會文記)와 분금문기(分衿文記)의 두 가지가 있는데 화회문기(和會文記)는 재주(財主)가 사망한 후에 상속을 받는 당사자(當事者)들이 모여 의논해서 적당히 분배하는 것이고 분금문기(分衿文記)는 재주(財主)가 생존시(生存時)에 유언 등으로 상속권자(相續權者)와 상속분(相續分)을 미리 정하여 놓은대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¹²⁾.

그리고 분금문기(分衿文記)는 1매만이 작성되는데 비하여 화회문기(和會文記)는 여러 매가 작성되어 피상속자(被相續者)가 각기 1매씩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화회자체(和會自體)가 상호분쟁(相好紛爭)을 막기 위한 것이고 보면 당사자가 각기 1매씩 나누어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고 또 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사건 즉 분실(紛失) 진위판단(眞僞判斷) 등에 필요하고 또 이러한 사건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기록에 자주 보인다. 그러므로 본분재기(本分財記) 외에도 이와 꼭 같은 것이 발견될 가

11) 李殷相前掲書 p. 301 栗谷의 年譜에는 31才 거울에 吏曹佐郎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本分財記에는 作成時인 5월에 이미 佐郎으로 記錄하고 있다.

12) 李朝の財産相續法 參照

능성이 있는 것이다.

○부모의 전민(田民)을 상속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속대상(相續對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로는 보통으로 토지(土地) 노비(奴婢) 가옥(家屋) 농우(農牛) 십기등속(什器等屬) 공인권(貢人權)[공물(貢物)]을 관청에 납품하는 것을 청구(請負)로 맡은 권리] 도장권(導掌權)[궁장토등(宮匠土等)의 소작료수납청부(小作料收納請負)의 권리] 등이 있는 바 본문기(本文記)에는 토지(土地)와 노비(奴婢)가 주(主)를 이루고 가옥 일좌(家屋 一坐)가 따로 있을 뿐이다.

○진고(陳告)라는 것은 도망노비(奴婢)를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상(賞)으로 일구(一口)를 준다고 한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공노비(公奴婢)인 경우 사구(四口)를 진고(陳告)하면 일구(一口)를 상(賞)으로 준다고 규정¹³⁾하고 있어 사노비(私奴婢)인 경우도 이에 준(準)하여 사구(四口)를 진고(陳告)하면 일구(一口)를 상(賞)으로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망노비(奴婢)의 구수(口數)를 기록하지 않고 일구(一口)를 상으로 준다고 한 것은 이원수가소유(李元秀家所有) 노비(奴婢)의 도망구수(逃亡口數)는 사구이하(四口以下)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상급노비일구(賞給奴婢一口)는 도망노비수(逃亡奴婢數)에 포함된 것이고 따라서 이들 도망노비(逃亡奴婢)는 다음에 열거되는 노비수(奴婢數)에서 제외된 것이다. 노비의 도망문제(逃亡問題)는 이조후기 18세기에는 우심(尤甚)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었는데 임란전(壬亂前)인 당시에 벌써 그 전징세(前徵勢)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 입후조(禮典 立後條)나 형전 사천조(刑典 私賤條)에 상속 재산의 분배의 차등(差等)은 있으나 적자녀(嫡子女) 양첩자녀(良妾子女) 천첩자녀(賤妾子女)는 다같이 피상속자(被相續者)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주(財主)의 첩자신(妾自身)에게 분배하고 있는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실례도 찾아볼 수 없다¹⁴⁾. 본분재기(本分財記)에는 그 말미(末尾)에 서모(庶母)[이원수첩(李元秀妾)]에게도 근소 하나마 노비(奴婢)와 토지(土地)를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후술(後述)] 이것은 본분재기(本分財記)의 특기(特記)할만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조봉건사회(李朝封建社會)의 귀족층인 양반계급은 첩을 거느리는 것은 보통으로 되어 있고 또 그들도 상속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여타문제(餘他問題)는 필요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유독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 할 것이다.

2) 「一擇兄弟一人爲有司凡祭祀乙宗子與有司同議奉行爲乎矣宗子家有故爲去等有司家行祭事」

「형제 가운데 1인을 택해서 유사(有司)로 삼고 무릇 제사(祭祀)는 종자(宗子)와 유사(有司)가 함께 의논해서 봉행(奉行)하오되 종가(宗家)에 탈이 있거든 유사가(有司家)에서 제사를 행한다」

○제사(祭祀)는 남계(男系)의 남장자(男長子)가 승계한다. 이것을 종자(宗子)라하고 차

13) 經國大典 刑典 公賤條 p. 489 「陳告者逃漏奴婢每四口賞給一口」

14) 經國大典 朝鮮의 財産相續法 朝鮮田制考等書 參照

자(次子)를 지자(支子)라 한다¹⁵⁾. 또 적자(嫡子)가 없거나 첩의 소생(所生)에서도 남자가 없으면 관(官)에 고해서 종중(宗中)의 지자중(支子中)에서 가려서 제사를 받들게 한다¹⁶⁾. 이렇게 해서 가려진 자를 승중자(承重子)라 하고 타자녀(他子女)를 중자녀(衆子女)라 한다¹⁷⁾. 제사를 받드는 자는 타자(他子)에 비해서 재산상속에서 특권이 있어서 입묘가사의(立廟家舍外)에 제전(祭田)과 묘전(墓田)을 분배받게 되고¹⁸⁾ 균분(均分) 받는 외에 1/5가량 더 받게 된다¹⁹⁾.

○이 형제중에 유사(有司)를 1인 선정하여 종자(宗子)를 두고 또 종자(宗子)가에 탈이 있을 때 제사를 대신 받들게 한 것은 예외적인 약정(約定)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종자(宗子)인 일자 선(一子 璿)의 신상사정(身上事情)을 고려한 것 같다. 선(璿)은 평상시에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늘 몸이 불편하였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32세가 되어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또 47세의 젊은 나이에 별세하게 된 것도 모두 그러한 신병관계(身病關係)로 추측된다²⁰⁾.

3) 「一凡忌祭乙母得輪行皆行于宗子家爲乎矣每
年子孫等各出米助祭親子女則出十斗親孫子女則出
五斗親曾孫子女及外孫子女則年二斗事」

「무릇 기제사(忌祭祀)는 윤행(輪行)하지 않고 종자가(宗子家)에서 행하오되 매년 자손들이 각기 쌀을 내서 제사를 도읍고 친자녀(親子女)는 10두(斗)를 내고 친손자녀(親孫子女)는 5두를 내고 친증손자녀(親曾孫子女)와 외손자녀(外孫子女)는 2두를 낼사」

○화회지의시(和會之議時)까지는 종자가(宗子家)의 사정으로 형제가 돌려가며 기제사(忌祭祀)를 받든 것 같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오로지 종자가(宗子家)에서만 행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만약의 경우 종자가(宗子家)의 사고를 예상하여 즉 일자 선(一子 璿)의 신병(身病) 때문에, 따로 유사(有司)를 정하여 그로 하여금 기제사(忌祭祀)를 봉행(奉行)토록 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이 이원수(李元秀) 사후(死後) 만2년의 상기(喪期)를 지내고도 3년 후에 분재(分財)하게 된 이유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4) 「一凡奉祀田畝所出奴婢身貢及助祭之米等乙
宗子與有司同監收合藏于宗子家或有司家只用于祭
祀事」

「무릇 봉사전답(奉祀田畝)의 소출(所出)과 노비(奴婢)의 신공(身貢) 그리고 조제미등(助祭米等)은 종자(宗子)와 유사(有司)가 같이 감수(監收)하여 종자가(宗子家)에나 유사가(有司家)에 합장(合藏)하여 제사에만 쓸 일」

○제사용재(祭祀用財)의 보관장소, 또 그것을 받아 들이는 임무, 이에는 약정한대로

15) 李朝の財産相續法 p.23
16) 經國大典 禮典 立後條
17)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
18) 李朝の財産相續法 p. 18
19)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
20) 李殷相: 前揭書 p. 174, 175 參照

꼭 정량을 납부토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여 보관된 재물(財物)은 종자나 유사라 할지라도 제사외에 절대로 유용(流用)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고 있다. 동복형제지간(同腹兄弟之間)에 이와 같은 엄격한 약정은 요즘 사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좀 심한 듯 하나 법이론상(法理論上)으로 지극히 세밀(細密)하고 발달된 아이디어라 하겠으며 이원수가(李元秀家)의 법도(法度)를 엿보게 한다.

5) 「奉祀條瓦家一坐坡州栗谷員難字番八十四卜
內十四卜八斗落梨川伏染字田七卜坡州接奴元同良
產四所生奴末叱石年乙巳奴禹成年丙午江陵接婢銀
鍾一所生婢內了 (隱의略字)今年壬寅 印」(・點筆
者註)

「봉사조 호가(奉祀條 互家) 1채 파주율곡일원(坡州栗谷一員)에 있는 난자답(難字番) 84복중(卜中)의 14복(卜) 8두락(斗落), 이천(梨川)에 있는 염자전(染字田) 7복(卜), 파주에 사는 노동원(奴元同)의 양인처(良人妻) 소생(所生) 4자노(子奴) 끝돌이 연(年)22세, 노(奴)우산의 3자노(子奴) 우성 연21세, 강릉 사는 비(婢)는 종의 1여비(女婢) 안꿈이 연25세 인(印)」

○난자답(難字番)이라는 것은 답(番)의 지번(地番)을 천자문(千字文)의 순으로 메겨나간 것으로 요즘의 숫자로 번지를 메긴 것과 같다. 양전(量田)의 단위 5결(結)을 일자(一字)로 하여 매(每) 5결(結)마다 일자(一字)씩 메겨 나간 것이다²¹⁾. 지번을 메겨 나간 단위는 군(郡)을 지역단위로 한다. 일군내(一郡內)에 어느 곳부터 시작하여 즉 어느 양전 단위(量田單位)를 천자(天字)로 메기느냐 하는 것은 확실치 않으나 군청소재지(郡廳所在地)부터 시작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으나 그 원칙은 군(郡)마다 달라서 일정한 규정이 없이 군의 사정에 따라 행한 것 같다. 매량전(每量田) 조사시(調査時) 새로운 순서로 지번(地番)을 부여하기는 곤란하여 전번조사시(前番調査時)의 지번을 그대로 답습하여 나갔을 것이고 새로 분할하거나 신개답(新改番) 등은 동일 지번에서 제일(第一) 제이(第二)의 순으로 메긴 것 같다²²⁾.

○「파주접노(坡州接奴)…… 강릉접비(江陵接婢)……」 하는 가운데 「접(接)」자는 타문기(他文記)에는 유례가 없고 본문기(本文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거(居)」자와 동일한 뜻으로 해석했다²³⁾. 그러므로 말질석(末叱石)과 내은금(內隱今)은 외거노비(外居奴婢)가 되며 노명(奴名) 앞에 지명(地名)과 「접(接)」이 붙지 않은 우산

21) 金容燮: 量案의 研究(上) 史學研究 第7號 韓國史學會 4293年 5月 p. 8

22) 註22와 同

23) ① 「接」字를 「居」字의 뜻으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出身地」 또는 「緣放地」로 해석하느냐? 하는 問題는 實際的으로 奴婢가 率去奴婢냐? 外居하면서 身貢만 바치는 奴婢냐? 하는 問題에 부닥치게 된다.

② 「接」字를 「居」字와 同意로 해석한 理由는 李熙昇編 「국어대사전」에 尊接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을 「머물러서 살만한 곳을 定함」으로 하였다. 또 本文中 4)에 「凡奉祀田沓所出 奴婢身貢...」云云한 句節이 나오는데 奉祀條로 分配되는 奴婢에 「坡州接奴」等으로 나오므로 이는 外居하면서 身貢을 받치는 奴婢라는 뜻이 된다. 이 외에도 「接主」 「出接」 「接卒」等의 말이 있는데 「接主」란 말은 東學의 組織細包單位를 말하는 것으로 別問題로 하고 「出接」은 스승을 찾아 他地方으로 工夫하러 나가는 것을 말하고 「接卒」은 主人이 出他時 따라 다니는 侍從이라는 뜻이 있다. 여기에서 「接」字는 出身地域을 말하는 뜻을 推出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坡州接奴」하면 「坡州에서 온 奴」即 放郷이 坡州이거나 輸買等의 事由로 因하여 새로운 地域으로 왔다는 뜻이 된다. 本文記에서 이와 같은 뜻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居」자의 뜻이 「居」字와 同意냐? 하는 問題는 奴婢文記와 同一家의 戶籍騰本이 發見되면 兩者를 對照하여 確定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禹山) 우성(禹成) 등은 슬거노비(率居奴婢)로 해석한다.

○ 「노원동량산사소생노말질석(奴元同良産四所生奴末叱石)…」은 노동원(奴元同)과 양인처(良人妻) 사이에 난 4자(子) 말질석(末叱石)이라는 뜻으로 양부(良父)와 천첩(賤妾) 사이의 소생(所生)은 종모법(從母法)에 의하여 천인(賤人)이 되고 비록 양처(良妻)라 할지라도 부(父)가 천인이면 그 사이의 소생은 천부(賤父)에 좇아 천인(賤人)이 된다는 종천법칙(從賤法則)에 의한 것이다²⁴⁾.

○ 「말질석(末叱石)」 「내은금(內隱今)」 등 노비(奴婢)의 명(名)은 「말질들」 「안금이」 등의 순수한 우리말로 부르는 이름을 문서화할 때 이두식(吏頭式)으로 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 말미(末尾)에 「인(印)」 자(字)가 있는 것은 일목(一目)이 끝나면 인장(印章)을 찍어서 더 이상 가감(加減)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현금(現今) 문서에 「중(終)」 「끝」 등을 기입하는 것과 동의(同意)라 하겠다.

6) 「墓田坡州栗谷員難字畚八十四卜內四十卜八斗落文里員空字畚三十七卜內十八卜
묘전파주울곡원난자답팔십사복내사십복팔두락문리원공자답삼십칠복내십팔복
七斗落傳字田六卜空字田三卜空字田十九卜田六卜田十五卜內十卜印
칠두락전자전육복공자전삼복공자전십구복전육복전십오복내십복인」

○ 이하(以下) 본문 역문(本文 譯文)은 약(略)함

○ 묘전(墓田)은 그 땅의 추수로 제사비용으로 쓰는 뜻의 묘위답(墓位畚)[전(田)]이 아니라 묘가 소재한 땅 낭묘지(郎墓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에 받아들여야 할 묘(墓)가 울곡원(栗谷員)의 난자답(難字畚)을 비롯 문리원(文里員)의 공자답(空字畚) 등 7개소에 소재(所在)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에는 지목(地目)에 있어 전(田)과 답(畚)은 구별하였으나 묘지는 따로 지목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문리원(文里員) 앞에는 울곡원(栗谷員)과 같이 군명(郡名)이 표기되지 않았으나 같은 파주군내(坡州郡內) 1지역(1地域)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이하(以下)의 전자전 공자전(傳字田 空字田)도 파주군 문리원(坡州郡 文里員)이 될 것이다. 지번이 표기되지 않은 전육복(田六卜)과 전십복(田十卜)은 지번이 공자전(空字田)이 아니라 미상(未詳)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7) 「墓直坡州接奴元同二所生奴青山年乙酉奴禹山五所生奴恩郎福年壬戌洪原接婢莫非一所生奴文孫年丙寅同奴二所生婢丹春年乙卯三所生婢丹時年壬戌印」

○ 묘직(墓直)은 묘를 지키는 자 즉 묘관리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외거노비(外居奴婢)인 청산(靑山) 문손(文孫) 단춘(丹春) 단시(丹時)들과 노사랑복(奴思郎福)은 묘를 지키기 위하여 묘지인 파주 울곡원과 문리원 또는 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移徙)하여야 할 것이다.

24) 經國大典刑典公賤條 p. 490 「…唯賤人取良女所生從父役…」

8) 「一子生員璿衿古楊州番東邊十斗落又五斗落
 堡田北邊一日耕新溪接婢栗伊末所生奴今年癸巳
 婢末 婢子音德年丙申京中接婢成德二所生婢內
 了伊年丁酉坡州接奴禹山一所生婢德介年戊戌永川
 接婢末非三所生婢欣今年丁亥四所生奴欣里金伊年
 己丑龍安接婢名時二所生奴希福年甲辰新溪接奴青
 山五所生奴洪孫年丙寅婢子音德一所生奴銀松年壬
 子金堤接婢玉杯一所生奴連歲年辛巳婢允月一所生
 婢半月年丙午阿婢一所生婢豆非年乙丑京中接婢無
 齒二所生婢榮德年壬午洪原接婢內了伊三所生婢孫
 非年丙子威興接奴訥叱石良產一所生婢今德年甲寅
 慶州接婢欣德一所生婢欣進年丙辰印」

○ 자단(紫段)부터는 개인 분배분(分配分)을 장유(長幼) 차례에 의하여 기록해 나가는 것으로 자단(紫段)은 일자(一子)인 선(璿)의 몫이다. 그의 자(字)는 백헌(伯獻) 호(號)는 죽곡(竹谷)으로 1524년(중종 19년)에 나서 1570년(선조 3년)에 졸(卒)하였다.

○ 고양주(古楊州)는 한양(漢陽)의 옛 이름으로 태조가 그 즉위 3년에 한양에 정도(定都)하고 양주(楊洲)는 부치(府治)를 동촌대동리(東村大洞里)에 옮겼다가 다시 견주지(見州趾)로 옮기어 그곳을 양주(楊洲)라 이름하게 되고 옛 양주 즉 한양은 고양주(古楊州)라 속칭(俗稱)하게 되었다²⁵⁾ 하나 이조시대의 서울시·전지역을 이름하는 것이 아니라 아차산(峨嵯山) 부근이 아닌가 생각된다.

25)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十一楊州牧 「…本朝 太祖三年定都于漢陽郎古楊州移府治于東村大洞里降爲知楊州事未幾復陞爲府六年 又移府治于見州古址仍稱楊州…」

9) 「一女秉節校尉趙大男妻矜坡州粟谷員欲字畚十六卜又十二卜合十斗落絲字田二十九卜高陽伏佛非畚改字四卜六斗落墨字反畚四斗落坡州接婢思郎知一所生奴豐年年丙午京中接奴芝孫三所生奴春孫年壬辰永川接婢末非五所生婢欣里德年辛卯成川接婢銀今四所生婢月之年辛卯朔寧接婢加里知三所生婢豐德年壬辰洪原接婢萬千二所生婢億內年戊戌奴莫山一所生婢介屎年乙丑高原接婢內了非一所生婢玉德年壬午江陵接婢獻德四所生奴守石年戊寅高陽接婢石德三所生奴今石年庚午交河接婢孝道介四所生奴玆石年乙丑江陵接婢甘實三所生奴洪伊年己酉千代一所生奴于音山年甲午婢內了今一所生婢龜守年癸亥龜安接奴元孫一所生婢名時年庚辰同婢三所生奴春風年癸丑印

○ 일녀(一女)인 조대남(趙大男)의 처(妻) 매창(梅窓)의 분배 문이다.

매창(梅窓)은 1529년(중종 24년)에 생(生)하여 1592년(선조 25년) 64세로 졸(卒)하였다. 그녀는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재주를 가졌고 덕행이 높아 작은 사임당(師任堂)이라 일컬었다 한다. 그녀의 부(父) 조대남(趙大男)은 한양인(漢陽人)으로 자(字)는 희언(希彦)이고 사옹원(司饗院) 참봉(參奉) 건(鍵)의 아들이다. 그는 벼슬이 종부사 직장(宗簿司直長)으로 재직중 57세로 매창(梅窓)과 사별(死別)하였다²⁶⁾.

○ 「고양복불비답(高陽伏佛非畚)…」의 복(伏)은 복재(伏在)의 준말로 「있는」의 뜻이며 「불비답(佛非畚)」의 「불비(佛非)」는 고양군(高陽郡)에 있는 지명(地名)으로 생각되며 「답(畚)」은 다음 「개자(改字)」의 지목(地目)이 도착(倒錯)된 듯 하다.

○ 반답(反畚)…원래 전(田)을 답(畚)으로 개답(改畚)한 것. 요즘은 개답(改畚)하면 지목(地目)이 답(畚)으로 변경되나 당시는 반답(反畚)이란 지목이 따로 있어서 영구히 개답(改畚)한 토지임을 표시하였다.

26) 李殷相: 前揭書 參照

10) 「二子幼學璠矜坡州粟谷員難字畚八十四卜
 內十四卜八斗落欲字田八卜難字田三卜加叱同加耕
 田半半耕永川接奴末叱山一所生奴末石年壬辰婢末
 非二所生婢欣月年甲申高陽接婢石德五所生婢粉伊
 年庚辰洪原接婢萬千四所生奴子音金伊年乙卯婢孫
 非二所生奴千孫年辛亥高原接婢內ア非六所生奴今
 年甲午婢粉莊二所生奴世國辛丑婢內
 ア從一所生奴權春年庚申威興接婢中今末所生奴訥
 叱芑伊年 同奴三所生奴 年 洪原接婢內ア伊二
 所生婢萬千年庚午江陵接婢閑從一所生奴大ア今年
 海州接婢欣伊七所生婢末叱德年辛卯京中接奴金伊
 江一所生奴元伊年丁未坡州接婢子音非一所生奴邇
 同年戊戌婢思郎知四所生婢金德年庚子印.

- 이자(二子) 번(璠)의 분배 몫이다. 그의 자(字)는 중헌(仲獻) 호(號)는 정재(定齋) 생몰연대(生沒年代)는 미상(未詳)이다.
- 가질동(加叱同)…갓일등
- 경전반반경(耕田半半耕)…1일 같이 밭의 면적을 기준하여 반반일(半半日) 같이 면적임

11) 「二女忠義衛尹涉妻袴坡州粟谷員難字畚八
 十四卜內十四卜八斗落欲字田十三卜田一卜嬭寧接
 奴加里知二所生奴康哲年戊子京中接婢成德三所生
 婢內ア介年辛丑洪原接婢萬千一所生奴億眞年癸巳
 婢內ア伊五所生奴莫山年丙戌奴義常四所生婢加知
 今年甲子高原接婢粉莊三所生婢內ア從年癸卯奴德
 行一所生奴德守年丙午坡州接奴巧乙同二所生奴萬
 山年癸酉星州接奴石只一所生奴仁元年 金堤接婢

- 이녀(二女)의 분재(分財) 몫이다. 그의 명(名) 생몰연대(生沒年代)는 알 수 없으나 충의위(忠義衛) 윤섭(尹涉)의 처이다.

12) 「三子佐郎珥秬坡州粟谷員難字審八十四卜內十四卜八斗落絲字田五卜覆字田十二卜欲字田二卜坡州接婢古邑之一所生奴古邑同年癸巳同婢二所生婢古邑德年己亥京中接婢樂德奴一所生奴守環年辛丑朔寧接奴一龍一所生婢荷叱德年甲午星州接婢銀今二所生婢月非年乙酉新溪接婢德之三所生奴有孫年洪壬辰原接婢莫非五所生婢內了非年乙酉奴文孫一所生奴玉只年癸卯奴義常二所生奴世國年癸丑三所生奴世番年己未婢萬千一所生婢金保屎年威興接奴訥叱丕伊二所生婢今年壬戌永川接婢末伊一所生婢欣里年辛巳江陵接婢末乙德二所生 婢甘實年己卯京中接婢柳雲一所生奴順環年丙辰印」

- 삼자(三子) 울곡(粟谷)의 분배(分配) 몫이다. 그의 관한 기록은 약(略)한다.
- 「비만천일소생비김보시(婢萬千一所生婢金保屎)……」는 만천(萬千)의 삼소생(三所生)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또는 일소생(一所生)이 맞는다면 이소생(二所生)인 억진(億眞)이 이소생(二所生)이 되고 이소생(二所生)인 억내(億內)가 삼소생(三所生)이 될 것이다. 김보시(金保屎)의 생년(生年)이 미상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 「永川接婢末伊一所生……」에 딸이(末伊)는 딸비(末非)의 잘못된 듯하다.

13) 「二女故洪天佑妻秬坡州粟谷員難字審八十四卜內十四卜八斗落又審二十卜內五卜東邊四斗落欲字田二十七卜高山接奴億石一所生奴古公年己亥二所生奴入砂里年癸卯永川接婢欣里二所生奴希山年丙午奴末叱山三所生奴鹿備年丁未龍安接婢永代一所生婢千非年丁未洪原接婢孫非一所生奴貴千年丙申奴義常一所生婢內了春年乙巳高原接奴世國一所生婢 年金堤接婢寶盃三所生奴守知年甲午龍安接奴元孫一所生婢永代年 京中接婢柳雲三所生奴命環年乙丑星州接奴石只二所生婢雲代年 砥平接婢莫非一所生奴貴萬年新溪接婢德之二所生婢有今年高陽接婢粉伊一所生奴黃石年 印。」

- 삼녀(三女)의 분배 몫이다. 남양인 홍천우(南陽人 洪天佑)에 출가했으나 이때는 이미 작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명(名)과 생년(生年)이 미상이나 이때 바로 위인 울곡이 31세이고 바로 아래인 우(瑀)가 25세임으로 삼녀(三女)의 연령은 대략 27~8세로 추정된다²⁷⁾.

27) 南陽洪氏世譜 參照

14)「四子幻學璋矜坡州粟谷員難字畚十卜八斗落
又畚五卜四斗落器字田八卜欲字田六卜京中接婢成
德三所生奴福堅年壬寅坡州接奴禹山二所生婢中介
年 江陵接婢小今一所生奴黃京年 婢甘實四所生
婢 年 永川接婢末伊非七所生奴欣里同年丁酉九
所生奴希同年甲辰婢欣里一所生婢希非年甲辰洪原
接婢內了伊一所生奴孫行年丙寅奴加知金伊二所生
奴道采年丙寅同奴一所生婢石乙非年 高原接婢德
實一所生奴介尿年辛卯婢粉莊一所生奴黃男年癸巳
婢哲非三所生婢莫德年甲子奴金丁三所生婢同叱非
年己卯永川接奴末伊同一所生奴大了同年丙辰 印」

○ 사자(四子) 위(璋)의 분배 몫이다. 위는 초명(初名)이고 뒤에 우(稱)로 개명했으며
혹 후(翬)로도 나타난다. 자(字)는 계헌(季獻) 호(號)는 옥산(玉山)이다. 1541년(중종 37
년)에 생(生)하여 1609년(광해원년)에 몰(沒)하였다. 본분재기(本分財記)에 표시되어 있
는 것과 같이 당시는 아직 벼슬에 오르지 않아 문자 그대로 유학(幼學)이었으나 다음해
생원시(生員試)를 통과하여 빙고별좌(氷庫別座), 비안현감(比安縣監) 등을 거쳐 군자감
정(軍資監正)까지 지냈다. 벼슬은 비교적 높지 않았으나 인성이 어질고 착했으며 특히
학문과 예술에 뛰어났다²⁸⁾.

○ 「경중접비성덕삼소생노복견년임인(京中接婢成德三所生奴福堅年任寅)」 삼소생(三
所生)은 사소생(四所生)의 잘못된 듯 함.

15)「庶母權矜坡州粟谷員難字田四卜欲字田二卜
呂州東面大去里員李字畚九卜十二斗落坡州接婢恩
郎知二所生奴豐山年 三所生婢豐非年甲午洪原接
婢內了伊四所生奴義常年壬午 印」

○ 서모권씨(庶母權氏)의 분배(分配) 몫이다. 이때는 본부인(本婦人)인 신씨(申氏)가
몰(沒)한지 15년 후이므로 생존시(生存時)부터 있었는지 또는 사후(死後)인지 알 길이
없으며 그 소생(所生)은 없었던 것이 틀림없으리라 생각된다.

○ 여담(餘談)이지만 권씨는 성정(性情)이 무척 악(惡)한 편이었으나 삼자이(三子珮)
와 사자우(四子瑀)가 잘 받들어 가내 화평(家內 和平)에 노력하였다 한다²⁹⁾.

16) 「筆執長兄 生員 李璿(필집장형 생원 이선)

妹夫 秉節校尉 趙大男(매부 병절교위 조대남)

28) 李殷相: 前揭書 參照

29) 李殷相: 前揭書 參照 p. 307

次弟 幼學 李璠(차제 유학 이번)
 次妹夫 忠義衛 尹涉(차매부 충의위 윤섭)
 三弟 吏曹佐郎 李珪(삼제 이조좌랑 이이)
 三妹 故學生 洪天佑妻李氏(삼매 고학생 홍천우처이씨)
 四弟 幼學 李璋(사제 유학 이위)」

○ 병인년(丙寅年) 5월 화회지의(和會之議)에 참석한 남매(男妹)들이 서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삼매 이씨(三妹 李氏)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이름 아래 수결(手決)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서모권씨(庶母權氏)는 재산을 분배받았음에도 이 회의에는 참석치 않았는지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4)

상속재산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분배대상이 된 재산은 이원수(李元秀)가 그의 부(父)로부터 받은 재산에다 그의 처(妻)인 신씨(申氏)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분재기(本分財記)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처(夫妻)의 재산을 가려낼 수가 없다. 그러나 강릉 권용만씨(權容萬氏)가 소장하고 있는 신사임당자매분재기(申師任堂姉妹分財記)를 분석 검토하면 가능할 것이다. 먼저 圖表 2에서 보면 토지가 소재한 곳은 파주(坡州) 이천(利川) 고양주(古楊州) 고양(高陽) 여주(呂州) 등 5개군이고 그중 95% 이상이 파주군(坡州郡)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이원수가의 생활근거가 파주군이기 때문이다. 파주군 중에서도 울곡원(栗谷員)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난자답(難字畓)은 84복(卜) 42두락(斗落)으로 재산의 기간(基幹)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원수의 부(父)로부터 상속재산(相續財産)의 중심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토지는 전(田)과 답(畓)이 있는데 전(田)의 총화(總和)가 135복(卜) 14일경(日耕)이고 답(畓)이 163복(卜) 108두락(斗落)으로 답(畓)이 3/5의 비중을 보인다. 이에 토지의 등급이 나타나 있지 않아 단순히 면적으로만 그 가치를 따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원수 소유토지를 요즘 농가토지소유량과 비교하여 보자. 답(畓) 164복(卜)은 1.63결(結)로 16,300평이고 108두락(斗落)은 1두락을 평균 150평³⁰⁾으로 쳐서 16,200평, 고로 답(畓)의 면적이 32,500평이 된다. 전(田)은 135복이 135결(結)로 13,500평, 1과 1/4일경(日耕)은 1일경을 평균 530평으로 쳐서 663평, 고로 전(田)의 화(和)가 14,030평이 된다. 토지의 총화(總和)가 46,530평으로 요즘 1인 토지소유량 9,000평에 비하면 대호(大戶)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노비분배상황(奴婢分配狀況)을 살펴보기로 한다. 노비(奴婢)의 총구수(總口數)는 119구(口)이고 그중 노(奴)가 68구, 비(婢)가 51구이다. 또 타지방에 거주하면서 신공(身貢)만 받치는 노비가 89구이고 동거(同居)하는 노비가 30구이다. 또 이들을 분배대상자별(分配對象者別)로 살펴보면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데는 가장 유용한 연령인 21세~24세에 속하는 노비가 3구이고, 묘전(墓田)에는 노비가 1구도 배당되지 않았다. 이는 묘전(墓田)이 단순한 묘소재(墓所在) 지역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비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묘직(墓直)에는 노(奴) 3구 비(婢) 2구 계(計) 5구가 배당되었는데 연령상으로 보면 61세 1구 43세 1구 그리고 미성년 3구로 되어있다. 이것은 묘관리가 비교적 한가

30) 周藤吉之: 前掲書 p. 5

한 노역(勞役)이고 여러 가지 예의절차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린 자녀를 거느리고 종사토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7매(妹)에게는 15구~16구씩이고 연령층도 적당히 안분(安分)한 것을 규지(窺知)할 수 있으며 솔거(率居)와 외거(外居)의 구수(口數)도 대체로 균분(均分)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으로 노비(奴婢)의 연령(年齡)은 재산가치상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관청내(官廳內)의 교환, 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의 교환, 또 사노비간(私奴婢間)의 매매교환(賣買交換) 등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³¹⁾. 노비의 존재가치는 그의 노동력이 주(主)이기 때문에 가장 노동력이 풍부한 청장년층(靑壯年層)이 고가(高價)하였음은 당연한 것이다. 외거노비(外居奴婢)도 그 신역(身役)의 의무(義務)를 공노비(公奴婢)인 경우 16세~60세까지 부과하고 있으며³²⁾ 사노비(私奴婢)도 이에 준(準)하였다. 그러나 사노비(私奴婢)가 더 가혹(苛酷)하여 노비의 도망사건(逃亡事件)이 사회문제화 하게 된다. 노비(奴婢)와 전답(田畝)의 재산상 가치의 평가는 전답십부(田畝十負)[복(卜)]가 노비일구(奴婢一口)에 적당하였다³³⁾.

도표 1 피상속자별(被相續者別) 재산분배표(財産分配表)

31) 備邊司臚錄3卷31冊 p. 131 上下肅宗元年乙卯正月 17日條에 「啓曰全羅道金溝居奉常寺奴丁生呈狀于本司曰…略…至於掌隸院 則奴婢之代給. 以年歲相准者啓下…而考出帳籍則繼善之奴天生, 年今六十一歲, 奉常寺奴丁福則四十一歲也 如比老以懸殊之奴, 不有法例, 目蒙然啓下代給之責, 在所難□…略

32) 經國大典 刑典 奴婢條

33) 朝鮮田制考 p. 17에 다음과 같이 引用하고 있다. 「詞訟類□私賤條에 嘉靖三十二年五月初二日, 三公議, 田地與奴婢相適爲當, 又萬曆四年六月二十六日大臣議, 田地十負準奴婢一口宜當, 啓下漢城府…」

逃亡事件이 社會問題化 하게 된다. 叔母와 田舎의 財産上 價値의 評價는 田舎十貞(卜)가 叔母一口이 適當하였따.

圖表 1
被相続者別 財産分配表

奉祀條

五家 一坐

坡州栗谷員 鄭字香 十四卜八斗落
利川 吳字田 七卜
坡州柳叔 宋比芝(22)
再 成(21)
江陵 韓 丙了今(25)

墓 田

坡州栗谷員 鄭字香 十四卜八斗落
文龍員 空字香 十八卜七斗落
傳字田 六卜
空字田 三卜
19卜
6卜
10卜

墓 直

坡州 叔 青山(42)
彭即顯(5)
洪原 叔 文孫(51)
韓 行奉(12)
韓 行時(5)

一子塔

古橋川香 10斗落
5斗
崇田北邊一日鏡,
新溪 叔 今山(34)
韓 子官德(31)
京中 韓 丙了伊(30)
坡州 韓 德介(25)
永川 韓 秋今(40)
叔 秋眞金伊(38)

德安 叔 希福(23)
新溪 叔 洪孫(61 丙了 1)
叔 新松(15)
金堤 叔 延成(26)
韓 平月(21)
" 豆萍(2)
京中 韓 業道(45)
洪原 韓 孫亦(51)
成興 韓 今德(13)
慶州 韓 景道(11)

一女(柳憲禮大男妻)

坡州 栗谷員 張字香 16卜
12卜
韓字田 29卜
高陽佛非香改字 4卜 6斗落
蕭字反香 4斗落
坡州 叔 盡年(41)
京中 叔 奉孫(35)
永川 韓 秋星孫(36)
成川 韓 月之(36)
柳寧 韓 金德(35)
洪原 韓 德內(29)
韓 介景(2)
高原 韓 玉池(45)
江陵 叔 守石(49)
高陽 叔 今石(57)
交河 叔 芝石(2)
江陵 叔 洪伊(18)
叔 平香山(33)
韓 龜守(4)
德安 韓 名時(47)
叔 夢風(14)

二子 塔

坡州 栗谷員 鄭字香 14卜 8斗落
張字田 8卜
韓字田 3卜
加叱阿加耕田 半斗落

永川 奴 末石(35)
 婢 欣月(43)
 高陽 婢 粉伊(47)
 洪原 奴 于音金伊(12)
 奴 千孫(16)
 高原 奴 今守(33)
 奴 世國(26)
 奴 權春(7)
 成興 奴 訥比瑟伊()
 奴 ○○
 洪原 婢 萬千(59)
 江陵 奴 大ア今()
 海州 婢 末叱德(36)
 京中 奴 元伊(20)
 坡州 奴 溫同(29)
 婢 今德(27)

二女(尹涉妻)

坡州 栗谷員 難字畚 14卜 8斗落
 欲字田 13卜
 1卜

朔寧 奴 康哲(39)
 京中 婢 内ア介(26)
 洪原 奴 億贊(34)
 奴 莫山(41)
 婢 加知今(3)
 高原 婢 内ア從(24)
 奴 德守(21)
 坡州 奴 禹山(54)
 星州 奴 仁元()
 金堤 婢 無常(36)
 海州 奴 者叱金伊(55)
 新溪 奴 貴千()
 永川 婢 萬月(31)
 龍安 婢 粉從(26)
 砥平 奴 希孫(20)

三子(珥)

坡州 栗谷員 難字畚 14卜 8斗落
 絲字田 5卜
 覆字田 12卜
 欲字田 2卜

坡州 奴 古邑同(34)
 婢 古邑德(28)
 京中 奴 守環(26)

朔寧 婢 荷叱德(33)
 星州 婢 月非(42)
 新溪 奴 有孫(35)
 洪原 婢 内ア非(42)
 奴 玉只(24)
 奴 世國(14)
 奴 世番(8)
 婢 金保尿(12~30)
 成興 婢 今花(5)
 永川 婢 欣風(46)
 江陵 婢 甘實(48)
 京中 奴 順環(11)

三女(故洪天祐妻)

坡州 栗谷員 難字畚 14卜 8斗落
 畚 5卜
 東邊 4斗落
 欲字田 27卜

高山 奴 古公(28)
 奴 入砂里(24)
 永川 奴 希山(21)
 奴 鹿備(20)
 龍安 婢 千非(20)
 洪原 奴 貴千(31)
 婢 内ア春(22)
 高原 婢 ○○(世國一所生)()
 金堤 奴 守知(33)
 龍安 婢 永代(47 以上)
 京中 奴 命環(2)
 星州 婢 雲代()
 砥平 奴 貴高()
 新溪 奴 有今()
 高陽 奴 黃石()

四子(珠)

坡州 栗谷員 難字畚 10卜 8斗落
 畚 5卜 4斗落
 器字田 8卜
 欲字田 6卜

京中 奴 福堅(25)
 坡州 奴 中介(22~28)
 江陵 奴 黃景()
 婢 ○○(17 以下)
 永川 奴 欣風同(30)
 奴 希同(23)

婢 希非(23)
 洪原 奴 孫行(61)
 奴 道采(61)
 婢 芑非()
 高原 奴 介屎(36)
 奴 黃男(39)
 婢 莫德(3)
 婢 同叱非(48)
 永川 奴 大ア同(11)

庶 母

坡州 栗谷員 難字田 4卜
 欲字田 2卜
 呂州東面大去里員 李字畚 9卜 12斗落
 坡州 奴 豐山(34 以上)
 婢 豐非(33)
 洪原 奴 義常(45)

※ 奴婢名뒤 ()內的 數字는 年齡임.

圖表 2

土地所在地別分配量表

	所在地	地番	地目	分配量	計
奉祀	坡州栗谷員 利川	難字 染字	畚 田	14卜 8斗落 7卜	畚14卜 8斗落 田 7卜
墓田	坡州栗谷員 文里員	難字 空字 傳字 空字	畚 畚 田 田	14卜 8斗落 18卜 7斗落 6卜 3卜 19卜 6卜 10卜	畚32卜15斗落 田44卜
一子 璿	古楊州	埜田 北邊	畚 田	10斗落 5斗落 一日耕	畚15斗落 田一日耕
一女 趙大男 妻	坡州栗谷員 高陽	欲字 絲字 佛非 改字 黑字	畚 田 畚 反畚	16卜 } 12卜 } 10斗落 29卜 4卜 6斗落 4斗落	畚32卜10斗落 田29卜
二子 璿	坡州栗谷員 加叱同加耕	難字 欲字 難字	畚 田 田 田	14卜 8斗落 8卜 3卜 半半耕	畚14卜 8斗落 田11半半耕

도표 2 토지소재지별분배량표(土地所在地別分配量表)

二女 尹沙妻	坡州栗谷員	難字 欲字	畚 田	14卜 8斗落 13卜 1卜	畚14卜 8斗落 田14卜
三子 珥	坡州栗谷員	難字 絲字 覆字 欲字	畚 田 田 田	14卜 8斗落 5卜 12卜 2卜	畚14卜 8斗落 田19卜
三女 故洪天 佑妻	坡州栗谷員	難字 欲字	畚 畚 田	14卜 8斗落 5卜東邊4斗落 27卜	畚19卜12斗落 田27卜
四子 璋	坡州栗谷員	難字 器字 欲字	畚 畚 田 田	10卜 8斗落 5卜 4斗落 8卜 6卜	畚15卜12斗落 田14卜
庶母	坡州栗谷員 昌州東面大 去鳳員	難字 欲字 李字	田 田 畚	4卜 2卜 9卜12斗落	畚 9卜12斗落 田 6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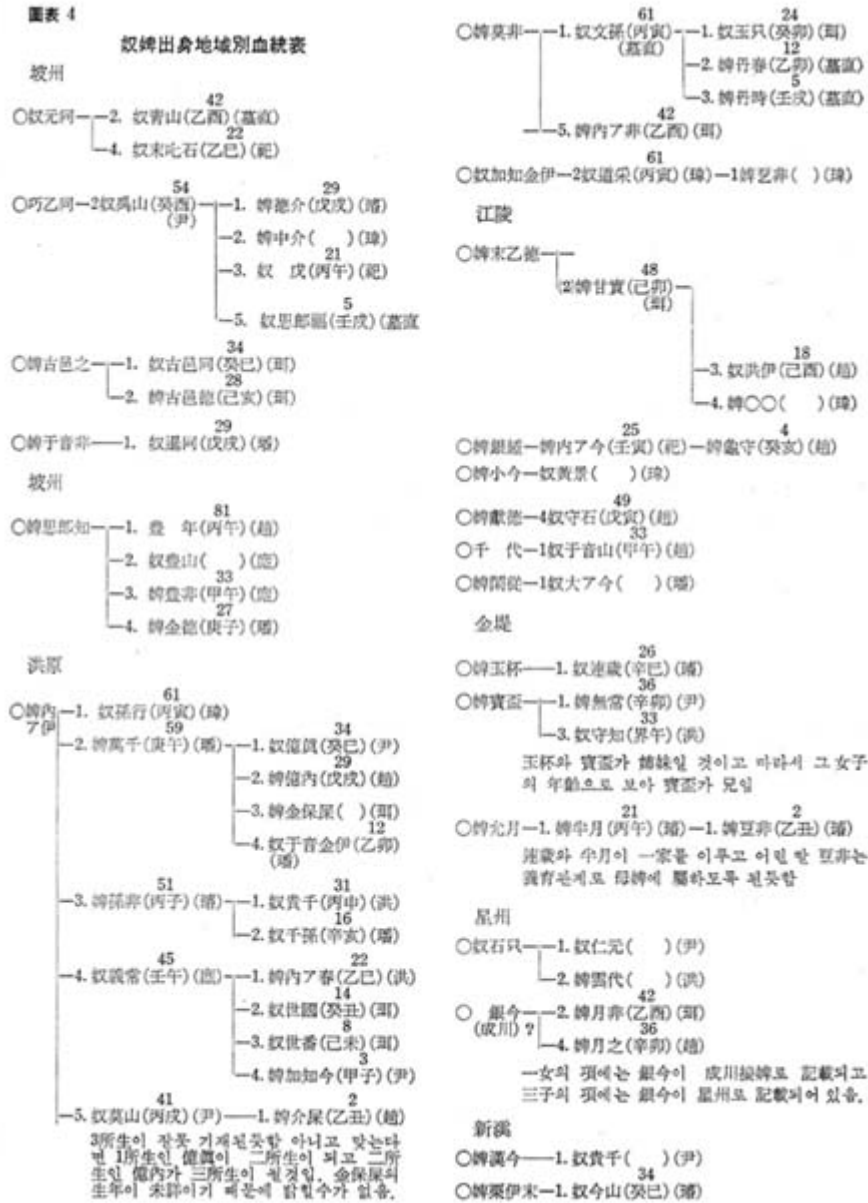
圖表 3

奴婢分配量

	奴	婢	外居	率居	計
幸 祀	2	1	2	1	3
墓 田	0	0	0	0	0
墓 直	3	2	4	1	5
三子 璋	6	10	12	4	16
一女 趙大男妻	8	8	13	3	16
二子 璋	11	5	11	5	16
二女 尹沙 妻	9	6	12	3	15
三子 珥	7	8	11	4	15
三女 故洪天佑妻	10	5	13	2	15
四子 璋	10	5	8	7	15
庶 母	2	1	3	0	3
計	68	51	89	30	119

도표 3 노비분배표(奴婢分配表)

도표 4 노비출신지역별혈통표(奴婢出身地域別血統表)



- 神太○○—1. 神子音道(丙午) (備)→1. 牧原松(壬子) (備)
- 神鹿光—2. 神光今() (伊)
→3. 牧原松(壬辰) (備)
- 牧音山—1. 山音道(丙午) (備)
1音 叶+音 和流斗 尾
留響
- 牧鹿—1. 音音道(丙午) (備)
- 神加加加—1. 牧音者(庚子) (伊)
→3. 神鹿松(壬辰) (備)
- 松州
- 神松松—1. 神松道(丙辰) (備)
- 松州
- 神松伊—3. 牧音松金伊(壬申) (伊)
→7. 松光七道(甲辰) (備)
- 高福
- 神石松—3. 神今石(庚午) (備)
→5. 神松伊(庚辰) (備)→1. 牧高石() (伊)
- 福○
- 神松伊—1. 牧松高() (伊)
- 牧音松—1. 牧音松(丁亥) (伊)
- 安河
- 神手道—4. 牧音松(乙亥) (備)
- 高山
- 神松石—1. 牧古松(乙亥) (備)
→2. 牧入松道(庚辰) (備)
- 鹿安
- 神松伊—1. 神松代() (伊)→1. 神手伊(丁亥) (備)
→1. 神松時(庚辰) (備)→1. 神松松(甲辰) (伊)
→5. 牧音松(甲辰) (備)
→3. 牧音松(庚辰) (備)
- 成興
- 神中今—1. 神松松(庚辰) (備)
→1. 神今松(甲辰) (備)
→2. 神今松(壬辰) (備)
→4. 牧○○() (備)
- 京中
- 神松松—1. 神松松(壬午) (備)→1. 〇字松(甲辰) (備)
- 神松松—1. 神內ア伊(丁酉) (備)
→3. 神內ア介(甲辰) (伊)
→3. 牧 松 松(壬辰) (備)
田子音 葉+音 和流松+ 神松松+ 神松松+ 田子音
和流松+ 田子音 音松+ 音松+ 田子音 音松+ 田子音 音松+
田子音+ 牧松松+ 牧松松+ 田子音 音松
- 神松伊—1. 牧音松(丙辰) (備)
→1. 牧音松(乙亥) (備)
- 牧松伊—1. 牧音松(壬辰) (備)
- 牧金伊—1. 牧光伊(丁亥) (備)
- 高福
- 神松伊—1. 牧今松(甲辰) (備)
- 牧音石—1. 牧音石(甲辰) (伊)
- 神松伊—1. 牧音松(甲辰) (伊)
→4. 牧今石(甲辰) (備)
- 神松伊—1. 牧音松(庚辰) (備)
→2. 牧音松(甲辰) (備)→1. 神○○() (伊)
→3. 神內ア伊(庚辰) (伊)→1. 牧音松(甲辰) (備)
- 牧金伊—1. 牧音松(甲辰) (備)
- 永川
- 神松石—1. 牧高石(丁亥) (備)
→2. 牧高石(甲辰) (伊)
→3. 牧音松(丁亥) (伊)
- 神松伊—1. 牧大字道(丙辰) (備)
- 神松伊—1. 神松松(甲辰) (備)→1. 神松伊(甲辰) (備)
→2. 神松伊(甲辰) (備)→2. 神松山(甲辰) (伊)
→3. 神松今(丁亥) (備)
→4. 牧松松今(乙亥) (備)
→5. 神松松(甲辰) (備)
→7. 牧松松(丁亥) (備)
→9. 牧音松(甲辰) (備)